


2020학년도 제 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의장	결 재
				권외숙		
개최일시	2020년 7월 20일 (월) 오후 2시	회의 장소	행정관 605호			
		담당부서	기획팀			
참석의원	김홍갑, 노명희, 서채원, 송기창, 여인권, 오명전, 이성림, 이정규, 임지혜, 전라옥, 홍석환	기록자(간사)	권외숙	기록일	2020.7.20	
		불참의원	김화경			
		기타참석자	기획팀 권외숙 팀장, 기초교양대학교학팀 박은아 팀장, 특수대학원교학팀 송일근 팀장, 교육대학원교학팀 배은 경 팀장, 경영전문대학원 이주희 차장			
안건	1. 학칙 개정(안) 2. 특수대학원 학칙 개정(안) 3.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안) 4.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배포자료 및 기타	학칙 개정(안), 특수대학원 학칙 개정(안),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안),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 자료					

■ 심의(자문) 사항

- 의장은 대학평의원 총 의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2020학년도 제 3차 대학평의위원회가 성원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포하다.
- 의장은 첫 번째 안건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기획팀 권외숙 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학칙 제16조, 제17조, 제19조 개정(안)을 기획팀 권외숙 팀장이 설명하다.
 - 홍석환 의원이 교무위원의 인원수와 교무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다. 권외숙 팀장이 25명 정도의 주요 보직자인 처(원)장, 학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답하다.
의장은 E-mail 서면 회의의 경우 'Zoom' 등의 온라인회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의견교류를 통해 협의를 할 수 있는데 E-mail 서면 회의의 경우는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 부적절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다. 권외숙 팀장은 학칙 개정(안)은 서면 회의가 가능한 근거를 규정에 반영하는 부분이며 온라인 면대면 회의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각 규정에 별도로 규정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답하다.
김홍갑 의원은 제16조 7항의 학내 감염병관리규정을 근거로 학칙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상·하위 규정 위계가 맞지 않는 형식의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다.
홍석환 의원은 교무위원회의 경우 결정하는 안건의 중요도나 논의 사안의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기에 교무위원회의 경우는 직접 참석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회의가 아닌 온라인 대면 회의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다.
송기창 의원은 우선 다음 학칙개정 시 검토사항으로 학칙 16조 3항 제3호의 변경을 제안하다. 송기창 의원은 대학평의위원회에서 학칙개정안이 최종 심의·의결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무위원회 심의 사항인 학칙은 '대학평의위원회를 거치기 전 학칙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과 '학칙시행세칙과 그 밖의 본교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으로 각각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하다. 학칙 16조 5항 제1호는 사안의 경미성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하위규정이 없어 경미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교무위원회 설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어 1호의 신설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하다. 학칙 16조 5항 제2호는 온라인 대면 회의가 더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선결처분 제도의 예를 들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다. 학칙 16조 7항의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무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다.
오명전 의원은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회의(이메일 회의)를 삭제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제시하다. 전라옥 의원도 오명전 의원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 16조 5항 1호, 2호는 삭제하고 대면 회의

2020학년도 제 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권익숙		

■ 심의(자문) 사항

를 기본 근간으로 하되, 재난 상황에서만 온라인 화상회의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원들은 학칙 16조 5항 문구를 ‘교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천재지변 등 필요에 의한 경우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로 변경하고, 제16조 5항의 1, 2, 3호와 제16조6항의 ‘다만~’ 이하 문구, 제16조7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8항은 7항으로 변경하는 의견에 동의하다.

② 의원들은 학칙 제17조 개정(안)에 동의하다.

③ 전라옥 의원은 학칙 제19조6항의 별도의 출석 확인 절차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인지 질의하고 권익숙 팀장은 별도의 자발적인 확인 절차임을 설명하다.

송기창 의원은 서면 회의의 경우 찬반을 묻는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다. 논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총장선출제도 개선 규정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의 문제점 (1)이메일 확인을 회의 참석으로 인정 (2) 개정 규정의 조별로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의견을 묻는 절차 부재, (3)가만히 있으면 전체 규정 개정에 대해 찬성으로 인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다. 반대의 의견을 표할 때도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알 수 없게 진행됨을 이야기하다. 권익숙 팀장은 총장선출제도 개선의 경우 이메일 회의 전, 관련 설문조사를 사전에 진행하였음을 설명하고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의 문제점, 추후 관련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겠음을 이야기하다.

오명전 의원은 교무위원회와 전체교수회의 규정에도 온라인 대면 회의 방식과 이메일 서면 회의를 결합한 형태를 제안하다. 정년 전임교원의 인원수가 350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화상회의 등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학회에서 400명 이상이 참여하여 온라인상으로 의견 교류를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허용하는 것과 단순한 찬반을 묻는 경우에만 이메일 서면 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원들은 학칙 제19조 5항에도 학칙 제16조와 같은 근간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서면(이메일 포함)에 온라인회의를 추가하기로 하고, 1호의 문구를 ‘안건이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해 심의할 수 있도록’ 6항에 별도의 출석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수정하기로 하다.

홍석환 의원은 연구년 수행 교수를 제외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다. 대면 회의가 아니라면 연구년 수행 교수도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 교원의 금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년 수행 교수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다. 이성립 의원도 홍석환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다.

전라옥 의원과 송기창 의원, 의장은 전체교수회의 참석은 연구년 수행 교수의 경우도 가능하며, 전체교수회의의 개최 정족수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생각하여 회의 개최의 편의성을 위해 정족수에서만 제외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④ 의장과 의원들은 기획팀에서 수정 보완한 학칙 16조, 19조 개정(안)의 문구를 확인한 후 학칙개정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다.

3. 기초교양대학교학팀 박은아 팀장이 학칙 <별표4>를 설명하다.

송기창 의원은 학위명은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전공명과 학위명이 중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글로벌경영학사, 글로벌경영전공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다.

2020학년도 제 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권외숙 2020.02.28

■ 심의(자문) 사항

홍석환 의원도 송기창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 기업 입장에서 지식경영이란 경영의 한 가지 수단임에도 글로벌지식경영전공에 글로벌지식경영학사라는 학위명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서 경영학학사로 학위명은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경과조치에 특성화고졸재직자로 제한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다.

박은아 팀장은 본 연계 전공은 재직자전형 입학생을 위한 연계전공으로, 재직자 입학전형은 특성화고졸업자로 제직중인 자가 입학 자격요건으로 되어있음을 이야기하다.

전라옥 의원과 송기창 의원은 주야간 교차 수강이 불가능한 연계전공은 당위성이 없음을 지적하다.

오명진 의원이 재직자전형을 주관하고 있는 경영학부 학부장으로서 부연 설명하다. 재직자전형을 운영하는 4개의 학과에서 논의한 결과, 아직은 주야간 교차 수강에 대한 대학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점, 재직자전형 학생들의 주간학과 전과 허용의 문제, 재직자전형 입학자들 내에서도 회사를 그만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장학금 수혜 문제, 주간 수업의 분반이 주간 입학생의 경우도 충분히 개설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직자전형 학생들까지 주간 수업을 허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음을 설명하다.

송기창 의원은 재직자전형 입학자로서는 차별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기존의 개방대학, 산업대학의 예를 보아도 장기적인 시점에서 처음부터 주야간 교차 수강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직자전형 학생이 주간 학과로 전과를 신청했을 경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학교에서 기술적으로 고민해야 함을 이야기하다. 의장도 송기창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다. 전라옥 의원도 교수 입장으로 모든 학생이 숙명의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함을 이야기하다. 이성림 의원도 과거 야간학부 입학 허용 시 처음에는 동문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우수한 학생 유입과 학교에 정원 확충이 되는 기반이 되는 등 큰 도움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다. 전체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인원수를 질의하고 박은아 팀장은 현재 270명 정도라고 답변하다.

의원들의 의견을 따라 박은아 팀장은 경과조치 삭제 여부와 학위명 변경을 해당 학과 측과 의견을 다시 논하기로 하다.

의원들은 본 안전에 대하여 학생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서채원 의원은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을, 임지혜 의원은 의견을 표하지 않다.

권외숙 팀장은 현재 주간 경영학 복수, 부 전공자도 수요에 따른 충분한 과목 수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계전공을 모든 학생에게 선택만 가능하게 해주고 실질적인 수업 이수하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원 발생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다. 박은아 팀장도 본 연계전공은 재직자전형 학생들에게 연계전공 선택을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다.

송기창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따라서도 입학전형에 따른 이수 전공 선택의 차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다. 재직자전형 입학생의 경우 다 전공 이수를 면제한다는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낮고 4개의 연계전공만 선택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표하다. 이후 재직자전형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데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고 재직자전형 정원을 일반 정원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조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전형에 따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말하다.

기획팀 권외숙 팀장은 경과조치에 '경영 전공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라고 표기하여 이에 대한 4개 학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과 의원들이 동의하여 다음 안전을 논의하기로 하다.

2020학년도 제 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권익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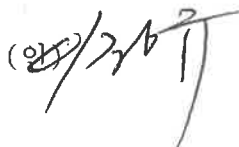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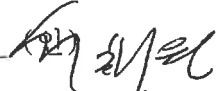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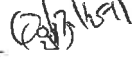

2020.02.20

■ 심의(자문) 사항

4. 의장은 두 번째 특수대학원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특수대학원교학팀 송일근 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송기창 의원은 추후 이러한 학칙개정의 사안에서는 기초데이터(입학 총원율, 지원율 현황 등의 근거 자료) 제 공할 것을 요청하다. 의장은 의원들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다.
5. 의장은 세 번째 교육대학원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교육대학원교학팀 배은경 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오명전 의원은 7조1항에 서류심사, 면접구술시험 등은 입학전형의 방법의 예시인 것 같고 입학전형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질의하다. 이정규의원도 ‘입학전형은~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라는 문구는 문제가 있어 ‘입학전형은 모집요강에 명시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다.
홍석환 의원은 21조 2항의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4학점까지 추가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큰 혜택이고 추가로 4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은 발탁된 우수한 사람에 한정하는 것이 맞고 이에 따라 일정 학점(GPA) 이상인 자만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문구 수정을 제안하다. 자 의적인 판단과 주임교수의 승인으로 결정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다.
이성립 의원은 학점 이수가 마무리되면 마지막 학기 등록금 비용이 줄어드는지 질의하고 배은경 팀장은 교육 대학원의 경우 5학기를 등록금 전액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답변하다. 또한, 5학기에 논문심사의 경우는 6학 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등록금 전액이 고지됨도 이야기하다. 송기창 의원이 일반대학원과 다르게 교육대학원 의 학점 이수와 논문작성에 대한 제도를 부연 설명하다. 재교육 과정 학생의 경우 현직 교사인데, 학점을 추 가로 더 듣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혜택인지 애매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21조 2항의 신설되는 문구 중 ‘인정되는 학기’ 라는 개념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다. 배은경 팀장은 일부 학생들의 경우 추가로 더 학 점 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 교원양성과정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문구를 추가하였음을 이야기하다. 의원들은 보충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에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문구 추가에 대해 논의 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다.
의장과 의원들은 수정 보완한 교육대학원 학칙 제7조와 제21조의 개정(안)의 문구를 확인한 후 교육대학원 학 칙개정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다.
6. 의장은 네 번째 경영전문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경영전문대학원교학팀 이주희 차장에게 설명을 요 청하다.
송기창 의원은 캡스톤디자인을 졸업요건에 추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캡스톤디자인은 실적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수하거나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야기하다. 홍석환 의원은 원래 캡스톤 디자인의 실제 포함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본 사례연구와 캡스톤디자인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다. 이주 희 차장은 사례연구와 캡스톤디자인은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답변하다. 홍석환 의원은 경영학과 공 학의 캡스톤디자인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공학에서의 캡스톤디자인으로 혼동을 가져올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다.
이주희 차장은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의 선택을 확대한 것임을 설명하다. 권익숙 팀장도 여러 가지 방식을 오픈한 방식임을 부연 설명하다.
의장은 의원들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다.
7. 의장은 16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0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 장 <u>여인권</u> 	부의장 <u>이정규</u> 
의 원 <u>김홍갑</u> 	의 원 <u>노명희</u> 
의 원 <u>서채원</u> 	의 원 <u>송기창</u> 
의 원 <u>오명전</u> 	의 원 <u>이성림</u> 
의 원 <u>임지혜</u> 	의 원 <u>전라옥</u> 
의 원 <u>홍석환</u> 